

#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05. 3. 23)

## 1. 심사 경과

- 가. 2005. 3. 7 : 이문상 의원의 6인 발의
- 나. 2005. 3. 18 : 의회운영위원회 회부(의안번호 제11호)
- 다. 2005. 3. 23 :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요지 : 의원 발의 안건으로 생략

### 가. 제안 이유

-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7362호,2005.1.27)되어 정례회 회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법령제명 띄어쓰기 등을 통하여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 내용

-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회기)삭제
-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표기 방법 개선

### 다.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 3. 검토 보고 요지(전문위원 이연찬)

-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법령상 지방자치법 제41조(개회,휴회, 폐회와 회의 일수)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시,도의 경우 40일 이내 시,군,구의 경우 35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회기를 제한하고 있었으나

-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제7362, 2005. 1. 27공포, 시행)으로 사천시의 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회기)의 규정인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또한 지방의회 회기 자율화는 지방 분권 추진 과제와 주요 내용이므로 연간 총 회의 일수(80일) 범위내에서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자율 조정토록 정비하는 것이며,
-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본문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표기하는 것과 법령제명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법제처에서 2005.1.1부터 제·개정되는 법령부터 그 제명의 띄어쓰기 기준을 마련하였는데, 그 기준에 의거 법령명은 단어별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며 법령의 본문 중에서 법령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령명 앞뒤에 낫표(「」)를 사용하여 본문의 문장내용과 구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의 고유명사로서의 특성을 표시하기 위함
-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과의 적합성, 법령제명의 띄어쓰기 및 법령의 명칭표기 기준을 바르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7. 소수 의견 : 없 음